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조 세 특 례 제 한 법 일 부 개 정 법 률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통합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공제율을 상향하고,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하여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비디오물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며,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특례를 확대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하여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의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확대하며,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설함.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 등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낙후도가 높은 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국민의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며, 서민·중산층 등 국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간과 신청기한을 연장하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확대하

고,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하며,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체계를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 폐지(안 제7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지원 대상 업종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수도권에서 일부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한 특례를 폐지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7조의4제1항)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안 제8조의3)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대

학 등에 중고자산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중고자산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1)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종료 시점 명확화(안 제12조의2)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취소 또는 유효기간 만료, 연구소 기업의 등록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면이 종료됨을 명확히함.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 자금 회수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한도를 증가대금의 30퍼센트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2)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서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서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3)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3조의4)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벤처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조, 제16조) 개인의 벤처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5조) 벤처투자 지원을 위하여 벤처기업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8)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확대(안 제16조의2 제1항및제2항)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해당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합계액이 5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

9)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대상 확대(안 제16조의3제1항)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분할 납부특례 대상을 현행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서 주권상장 벤처기업 및 코스닥 상장 벤처기업까지 확대 적용함.

10)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안 제16조의4)

스톡옵션 부여 당시에는 벤처기업이었으나, 행사 시점에는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용계좌 요건과 관련하여 사후관리 사유 및 귀속시기를 명확히 규정함

11)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간 확대(안 제18조제1항)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 취업하는 경우 소득세 50퍼센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

1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간 폐지(안 제18조의2제2항) 외국인근로자가 국내근무 시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선택하여 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게, 종전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간만 적용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적용기간을 폐지하여 항구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13)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안 제18조의3제1항)

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 복귀시 소득세 50퍼센트 감면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다.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1)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안 제24조)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중견기업의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및 일반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인상함.

2)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안 제25조의6제1항)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공제대상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해 제공된 비디오품을 추가함.

라. 고용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29조의4)

근로소득 증대를 위하여 3년 평균 임금 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 증가 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을 제외함.

2)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안 제29조의8)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증대 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등을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 및 일원화하여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및 일가정 양립의 지원을 위하여 정규직 전환자 및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하여 추가공제를 적용함.

마.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및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 신설(안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현행 30억원에서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시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의 50퍼센트 이하로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자진 신고·납부하는 근거를 신설함.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안 제30조의6)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증여세 과세가액 한도를 부모의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1,000억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사후관리 기간을 현행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함.

3)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안 제30조의7 신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은 거주자는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의 납부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

바.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60조)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산업단지 지정고시 이전부터 입주한 법인은 대도시 내 법인으로 간주하여 동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하고,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61조)

지역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63조)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함.

4)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안 제63조의2)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한

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성장촉진지역·인구감소지역·위기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기간을 확대함.

5)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2)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6)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69조의3)

어업인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7)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위반시 신고·납부 근거 신설(안 제71조)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사후관리 의무 위반시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을 신고·납부하는 근거를 신설함.

사.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72조)
조합법인의 공익적 성격을 감안하여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74조)

공익성이 있는 비영리법인과 지방소재 의료기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가 적용되는 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3)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77조의3)

개발제한구역 내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안 제85조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5조의8)

산업단지 조성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아.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1)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

제2항)

근로자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7조의2)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2제1항)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88조의5, 제89조의3)

농어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개인투자용 국채 보유 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안 제91조의22 신설)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저축을 지원하고 국채에 대한 수요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14퍼센트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특례를 신설함.

자.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

1)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안 제95조의2제1항)

무주택 세대주(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또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자)의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총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금액 4천500만원 이하자의 경우 12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그 외에는 10퍼센트에서 12퍼센트로 각각 상향함.

2)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연장(안 제96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4)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3)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5)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7조의9)

임대차 시장 안정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

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6)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99조의4)

귀농·귀촌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가액요건을 3억 원으로 상향함.

7) 영세개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안 제99조의10)

영세개인사업자 재기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재기 영세사업자의 기간 요건과 신청 기한을 1년씩 연장하도록 함.

차. 근로장려 및 자녀장려를 위한 조세특례

1)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안 제100조의3,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2)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5)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단독가구는 150만원에서 165만원으로, 홑벌이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3) 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안 제100조의5, 제100조의28)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을 ‘2억원 미만’에서 ‘2.4억원 미만’으로 상향하고 50퍼센트 감액구간을 ‘1.4억원 이상’에서 ‘1.7억원 이상’으로 상향함

4)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안 제100조의29)

자녀장려금 최대지급액을 자녀 1명당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함.

카. 그 밖의 직접국세 특례

1)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0)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 선화주 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안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를 위하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초과배당 시 이월공제 제도를 신설하고,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타. 간접국세에 대한 조세특례

1)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안 제105조제1항)

영농·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1호)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3)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4호의2)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온실가스배출권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제5호)

온실가스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및 상쇄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5)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1항8호의3)

대학생의 주거비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로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가 공급하는 기숙사 용역 및 행복기숙사가 학교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시설관리운영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6)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용 전기·수소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제106조제1항제9호의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전기·수소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

장함.

- 7) 간이과세자용 개인택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제106조제1항제9호의3)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8)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폐지(제106조제1항제11호)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함.

- 9)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제2항)

영농·영어비용 절감을 위하여 농·어민 등이 직접 수입하는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0)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06조의2제1항)

도서지역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을 위하여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1)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2제1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

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2)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07조의3제1항)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3)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제108조제1항)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10/1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 연장(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하이브리드자동차,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 15) 도서지방 거주민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제1항)

도서지방 거주민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하여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16)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안 제111조의2제1항)

서민·자영업자의 유류비 지원을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경형자동차 등의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대상 자동차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마련함.

17)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안 제111조의5제1항)

환경규제 강화에 따라 중유에서 경유로 전환한 선박들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부과되는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18) 창업·벤처투자,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17조제2항제1호)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출자하여 취득한 주권·지분 등 양도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주식·파생상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주식·파생상품 시장조성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육성을 위한 조세특례

1)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의 상향 조정(안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와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추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면세물품 가격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인상하고, 제주도여행객이 지정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면세물품 금액의 한도를 현행 600달러에서 800달러로 상향 조정함.

하. 그 밖의 조세특례

1)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정비(안 제122의3)

근로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을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공제율 100분의 20으로 신설하고,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

2)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단순화 및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26조의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30퍼센트 공제율이 적용되는 대상에 도서·공연 등 사용분에 더하여 영화관람료를 포함하고, 하반기(2022.7.1.~12.31.)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40퍼센트에서 80퍼센트로 대폭 상향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공제한도를 총급여 7,000만원 이하자는 300만원, 7,000만원 초과자는 250만원으로 단순화하고, 대중교통, 전통시장 등에 각각 100만원씩 적용되던 추가 공제한도를 통합하여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는 300만원으로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는 200만원으로 변경함.

3) 현금영수증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안 제126조의3제1항)

현금영수증사업자가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결제 건수 등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안 제126조의3제2항)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미만 현금거래에 대해 진화망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건당 20원을 소득세에서 세액공제하는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신설함.

5)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안 제136조제3항)

문화예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접대비의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변경함.

6)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안 제140조)

해저광물 탐사 및 채취를 위하여 조광권자, 대리인 등이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7. 22. ~ 8.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마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바목을 마목으로 한다.

제7조의4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4년간”을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첨단기술기업”을 “첨단기술기업(이하 이 조에서 “첨단기술기업”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연구소기업”을 “연구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기업”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2제2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첨단기술기업의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4제3항에 따른 첨단기술기업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첨단기술기업으로 재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유효기간 만료일

제13조제1항제1호, 제2호,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단서 중 “10”을 각각 “30”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의 제목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를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라 한다)”을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인수대상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 하며,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사업의 양수”를 “인수대상외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의 양수”로 하고,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3제3항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가목, 나목, 같은 조 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6항 중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각각 “인수대상외국법인”으로 한다.

제13조의4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

일”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을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으로, “5천만원”을 “2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누적 금액은 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코넥스상장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경우로 한정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1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부여받은”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및

「상법」 제340조의2 또는 제542조의3에 따라 부여받은”으로 한다.

제16조의4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9항(중건의 제8항) 중 “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3.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벤처기업 임직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용계좌를 통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한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하지 않은 주식을 거래한 날

⑧ 제1항은 벤처기업 임직원으로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시점에 그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기업이 더 이상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18조의2제2항 본문 중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을 “받는”으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5년”을 “10년”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 중 “3”을 “5”로 하고, 같은 목 1) 중 “5”를 “6”으로 하며, 같은 목 2) 중 “6(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을 “8(중소기업)”으로 한다.

제25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를 “방송프로그램, 영화 또는 비디오물”로, “상영된”을 “상영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내국인”을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를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29조의8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

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자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

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일 것
3.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한 날 부터 2

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청년등상시근로자 및 전체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의5제1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50억원”을 “10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를 “승계하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30억원”을 “50억원”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을 초과하는 경우

⑮ 제6항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이 부과되어 납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의6제1항 본문 중 “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1호”를 “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으로, “(100억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5억원”을 “10억원”으로, “30억원”을 “60억원”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7년”을 “5년”으로 한다.

1. 부모가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400억원
2. 부모가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600억원
3. 부모가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 1,000억원

제30조의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7(가업승계 시 증여세의 납부유예)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신청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 상속 또는 증여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유예를 허가할

수 있다.

1.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았을 것

2. 거주자가 제30조의6제1항에 따라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 특례를 적용받지 않았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납세의무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증여일(제3호의 경우에는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해당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나.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한정한다)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해당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거주자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이 경우 제4항제2호 중 “증여”는 “상속”으로 본다.
2. 해당 거주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제30조의6에 따른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또는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⑦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하거나 제5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제1항제2호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기업개선계획”으로, “같은 법 제20조”를 “같은 법 제27조”로 한다.

제60조제2항 전단 중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를 “대도시[다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이하 이 조에서 “산업단지”라 한다)를 제외한다, 이하 “대도시”라 한다]”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5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단지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주한 내국법인이 해당 지역에 있는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항을 적용한다.

제61조제3항 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2월 31일이”를 “2025년 12월 31일이”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전 지역의 구분

제6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연보전권역
- 2)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광역시(이하 이 조 및 제63조의2에서 “지방광역시”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나.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6호의 성장촉진지역
- 2)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
- 3) 위기지역

다.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1) 지방광역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된 나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 2) 가목 및 나목 외의 수도권 밖의 지역

3. 이전 지역의 구분에 따른 감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제2호 가목의 경우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나. 제2호 나목의 경우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다. 제2호 다목의 경우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6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전하여 2022년 12월 31일”을 “이전하여 2025년 12월 31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면기간”을 “이전 지역의 구분에 따른 감면기간”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지방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나.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

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다. 제6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 본사 이전 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제69조의2제1항 본문 및 제69조의3제1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제2항에 해당하는 영농자녀등은 제2항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미 증여세와 이자 상당액이 징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집대비”를 각각 “업무추진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9조의4까지”를 “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기부금”을 “일반기부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제7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6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5조의8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7조제2항 본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나목 중 “사업소득자”를 “자”로 한다.

제8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88조의5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1.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등: 100분의 5

제89조의2제1항제1호 중 “제91조의21”을 “제91조의22”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을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개인투자용 국채”로 한다.

제89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을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2024년 1월 1일”을 “2027년 1월 1일”로 한다.

제91조의18제2항제1호가목 및 나목 중 “한정한다”를 각각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0제1항제1호가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을 “직전”으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1제1항제1호 중 “한정한다”를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고, 직전 과세기간의”를 “직전 과세기간의”로,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91조의2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1조의22(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이하 이 조에서 “전용계좌”라 한다)를 통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채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개인투자용 국채(이하 “개인투자용 국채”라 한다)를 매입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1명당 총 매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10”을 “12”로, “12”를 “15”로 한다.

제9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6조의3의 제1항 중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97조의3의 제목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를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로 한다.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제97조의3제1항제1호 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97조의9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9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2억원”을 각각 “3억원”으로 한다.

제99조의10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2021년 12월 31일”을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6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제100조의3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 4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직계존속”을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으로 한다.

제100조의5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제100조의5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제100조의5제1항제3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제100조의5제4항 중 “1억4천만원”을 “1억 7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8제1항제4호 중 “2억원”을 “2억 4천만원”으로 한다.

제100조의29제1항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제100조의29제1항제2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제104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4조의3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배당가능이익”을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으로, “금액은”을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액”이라 한다)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배당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초과배당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 ⑤ 제4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액보다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된 초과배당액은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액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9호의3, 제11호 및”을 “제9호의3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로,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2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7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09조제3항, 제6항 및 제9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4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1조의2의 제목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를 “(경형자동차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차

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배기량, 최대적재량, 크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11조의5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17조제2항제1호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21조의13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600달러”를 각각 “800달러”로 한다.

제12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위하여 지급한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법 제59조의4제2항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고, 제3항 본문 중 “10”을 “12”로, “12”를 “15”로 한다.

제1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4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전통시장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40”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을 “2022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제126조의2제2항제3호에 나목 전단 중 “미술관에”를 “미술관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로,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4호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30”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도서등사용분”으로,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를 “15”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호 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등사용분”으로 한다.

제126조의2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를 각각 “제1호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액은 각각 연간 100만원”을 “금액을 합한 금액은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제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연간 250만원

2. 추가공제 한도

가.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나.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 연간 200만원

제126조의3제1항 중 “2022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결제하는”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으로 한다.

제126조의3제2항 전단 중 “발급건수”를 “발급건수(2025년 12월 31일까지 발급하는 분에 한정한다)”로 한다.

제127조제3항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및 제29조의8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 제29조의8의 규정은 제29조의7 및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다.

제128조제1항 본문 중 “제29조의7”을 “제29조의7, 제29조의8”로 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제29조의8”로 한다.

제136조의 제목“(접대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를“(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 특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접대비”를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136조제3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2025년 12월 31일”로 하고, 같은 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접대비”를 각각 “업무추진비”로 한다.

제140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2년 12월 31일”을 각각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제29조의7”을 각각 “제29조의7, 제29조의8”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775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2023년 1월 1일”을 각각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제1호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고, 부칙 제14조제1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하며, 부칙 제29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 중 “2023년 1월 1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영화관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72조제1항 및 제6항, 136조 제목 및 동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적용기한 연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법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법 중 상속세 및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④ 이 법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4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자산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에 관

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3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2제1항 및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6조의4제5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6조의4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9조(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과세특례 적용기간(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에 관한 적용

례) 제18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1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투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2조(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6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부터 적용한다.

제13조(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5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4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중소기업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16조(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에 관한 적

용례) 제71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8조(세금우대자료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9조(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1조의2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 제100조의5, 제100조의28, 제100조의29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제100조의6제9항에 따라 2022년 과세기간의 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같은 조 제 7항에 따른 반기 신청을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적용한다.

제23조(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31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제주도여행객 면세점에 대한 간접세 등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13제4항 및 제5항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면세물품을 판매하거나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5조(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6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26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대중교통이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26조의2의 개정규정(영화관사용분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한다)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126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7조(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관한 특례) 제30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수증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28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제97조의3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9조(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0조의32제5항에 따라 적립한 차

기환류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이 있는 내국법인은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제100조의 32제6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부할 금액은 제100조의32제2항제1호 괄호 안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업소득을 산정하여 계산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u>2022년 12월 31일</u>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제3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감면한다. 다만,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고 제2호에 따른 감면 비율을 적용한다.</p> <p>1. (생략)</p> <p>2. 감면 비율. 다만, 제1호무목에 따른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의 경우 나목, 다목 및 바목에도 불구하고 나목, 다목 및 바목의 감면 비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비율로 한다.</p> <p>가. ~ 라. (생략)</p> <p>마. 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p>	<p>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① ----- ----- <u>2025년 12월 31일</u> -----</p> <p>1. (현행과 같음)</p> <p>2. -----</p> <p>가. ~ 라. (현행과 같음)</p> <p><삭제></p>

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출연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 그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 4. (생략)

②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해당 내국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인 경우를 제외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고정자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형고정자산 장부가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임대를 개시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③ 내국인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위탁거래의 상대방인 수탁기업에 설치(제2항에 따라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 ~ 4. (현행과 같음)

② -----

----- 2025
년 12월 31일-----

③ -----

시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0분의 1(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의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신설>

----- 2025년 12월 31일-----

④ 내국법인이 사업에 사용하던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2025년 12월 31일까지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에는 기증한 자산의 「법인세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동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 해당 자산의 가액 등 필요한 사항은

④ ~ ⑥ (생략)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생략)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4년간의 일반연구·인력개발비의 연평균 발생액의 구분 및 계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생략)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해당 구역의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 ⑦ (현행 제4항부터 제6항까지와 같음)

⑧ ----- 제4항-----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 직전 과세연도에 발생한 일반연구·인력개발비 및 4년간-----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2조의2(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한다.

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정을 받은 첨단기술기업

2.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등록된 연구소기업

② 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지정을 받은 날 또는 등록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감면대상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

1. -----

----- 첨단기술기업(이하 이 조에서 “첨단기술기업”이라 한다)

2. -----

----- 연구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연구소기업”이라 한다)

② -----

기술사업자”라 한다),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3.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상법」상 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한다)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하 “창투조합등”이라 한다)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가. ~ 마. (생략)

4.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또는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운용법인등”이라 한다)이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창업자, 신기술

-- 2025년 12월 31일-----

3. -----

----- 2025년 12월 31일-----

가. ~ 마. (현행과 같음)

4. -----

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5.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시행령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에 상장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 제16조의2, 제46조의7 및 제117조에서 “코넥스상장기업”이라 한다)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6.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등을 통하여 코넥스상장기업에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출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

----- 2025년 12월 31일-----

5. -----

----- 2025년 12월 31일-----

--

6. -----

----- 2025년 12월 31일-----

② -----

법인 또는 인수목적법인의 지배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	----- -----
2. 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이 종전에 영위하던 사업을 폐지하거나 양수를 통하여 승계된 종전의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u>인수대상외국법인</u> ----- ----- ----- -----
3.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의 지분비율</u> (이하 이 조에서 “현재지분비율”이라 한다)이 주식등의 취득일 당시 지분비율(이하 이 조에서 “당초지분비율”이라 한다)보다 낮아지는 경우	3. ----- ----- ----- <u>인수대상외국법인</u> ----- ----- ----- -----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할 때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으로 <u>소재·부품·장비외국법인을 인수</u> (이하 “공동인수”라고 한다)하는 경우 1개의 내국법인이 인수하는 것으로 보며, 공동인수에 참여한 각 내국법인의 공제금액은 인수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⑥ ----- ----- ----- <u>인수대상외국법인</u> ----- ----- ----- -----

⑦·⑧ (생략)	⑦·⑧ (현행과 같음)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① ----- ----- ----- ----- ----- ----- -----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부품·장비 관련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투자대상기업”이라 한다)에 <u>2022년 12월 31일까지</u>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등	1. ----- ----- ----- ----- ----- <u>2025년 12월 31일</u> ----- -----
2.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이하 이 조에서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라	2. ----- ----- ----- ----- -----

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법인세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아니하는 금액의 한도는 출자자 1명당 2억원으로 한다.

1. 2.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를 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의 100분의 10(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출자 또는 투자의 경우에는 출자 또는 투자한 금액 중 3천만원 이하분은 100분의 100, 3천만원 초과분부터 5천만원 이하분까지는 100분의 70, 5천만원 초과분은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을 한도로 한다)을 그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제3항의 경우에는 제1항제3호·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기

년 12월 31일

1. 2.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① 2025년 12월 31일

업에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거주자가 출자일 또는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시기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한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타인의 출자지분이나 투자지분 또는 수익증권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출자하거나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6. (생략)

② ~ ④ (생략)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벤처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및 제16조의3에서 "벤처기업 임원 등"이라 한다)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벤처기

1.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의2(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①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한다)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달 1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삭 제

③·④ (생 략)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삭 제
 ②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외국인근로자”라 한다)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의2(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②

수관계기업”이라 한다)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근로소득에 100분의 19를 곱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할 수 있다.

③ ~ ⑤ (생 략)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학위 취득 후 국외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연구개발 및 기

받는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8조의3(내국인 우수 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①

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 100분의 6 (중견기업은 100분의 8, 중소기업은 100분의 16)에 상당하는 금액

나. (생략)

② ~ ⑤ (생략)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라 한다)의 제작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생한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100분의 3(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7, 중소기업의

----- 8
(중소기업-----

나.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5조의6(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① ----- 2025년 12월 31일----- 방송프로그램, 영화 또는 비디오물-----

경우에는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상콘텐츠가 처음으로 방송되거나 영화상영관에서 상영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2. (생략)

<신설>

②·③ (생략)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투융자집합투자기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

----- 상영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

1. 2. (현행과 같음)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비디오물로서 등급분류를 받고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의2호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를 통하여 시청에 제공된 비디오물

②·③ (현행과 같음)

제27조(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투자기구에 해당하는 투융자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투융자집합투자기

구”라 한다)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

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직전 3년 평균 초과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② (생략)

③ 내국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

1.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의4(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①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025년 12월 31일-----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2025

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근로기간 및 근로형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정규직 전환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전환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임금증가분 합계액의 100분의 5(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2. (생략)

④ (생략)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전체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증가분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금액 대신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다.

년 12월 31일-----

----- 100분의 2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1.·2.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
----- 2025년 12월 31일-----

1. ~ 3. (생략)
⑥ ~ ⑧ (생략)
<신설>

1. ~ 3. (현행과 같음)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①
내국인(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내국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상시근로자”라 한다)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청년 정규직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 60세 이상인 근로자, 경력단절 여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시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등상시근로

자”라 한다)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에 400만원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8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450만원(중소기업으로서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에는 1,550만원)]을 곱한 금액
2. 청년등상시근로자 외 상시근로자의 증가한 인원 수(증가한 상시근로자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 0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45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금액)
가. 수도권 내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850만원
나.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증가한 경우: 950만원
②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인이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 중 전체 상시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

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년등상시 근로자의 수가 최초로 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제1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22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라 한다), 「과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견근로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수급사업자에게 고용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하거나 「과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하거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원사업자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직접 고용하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이라 한다)에는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해당하는 인원에서 제외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④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육아휴직 복귀자”라 한다)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복귀자 인원(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에 1,300만원(중견기업의 경우에는 9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복직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과세연도에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이 육아휴직 복귀자의 근로소득세

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3.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각각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을 한 날, 육아휴직으로부터 복직한 날 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제144조에 따라 공제받지 못하고 이월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 사업연도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해당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3.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가.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규직 근로자(이하 이 조에서 “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수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정규직근로자 수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

우

나.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말부터 5년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급여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이라 한다)의 전체 평균이 증여일이 속한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2개 법인세 사업연도의 총급여액의 평균의 100분의 70에 미달하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납세의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해당 증여세(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한정한다)와 이자상당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1. 해당 거주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주식등을 증여받은 해당 거주자의 지분이 감소하는 경우
3. 해당 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유예된 세액의 전액 또는 일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징수할 수 있다.

1.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의 담보 보전(保全)에 필요한 관할세무서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부유예받은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경우

3.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증여세와 이자상당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거주자가 다시 증여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거주자는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받은 세액에 대해 제1항에 따른 납부유예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1. 해당 거주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를 받거나 같은 법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승계 시 상속세의 납부유예를 적용받는 경우. 이 경우 제4항제2호 중 “증여”는 “상속”으로 본다.
2. 해당 거주자가 해당 가업에 대하여 제30조의6에 따른 가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정비계
획법」 제6조제1항제2호의
성장관리권역, 같은 항 제3
호의 자연보전권역, 수도
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
나는 과세연도: 소득세 또
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신 설>

<신 설>

나.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다만, 다목에 해당
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1) 「국가균형발전법」 제2
조제6호의 성장촉진지역
- 2) 「국가균형발전법」 제2
조제9호의 인구감소지역
- 3)

다. 다음의 지역으로 이전하
는 경우

- 1) 지방광역시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지역에 지정
된 나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
- 2) 가목 및 나목 외의 수도
권 밖의 지역
3. 이전 지역의 구분에 따른 감
면기간 및 감면세액

가. 제2호 가목의 경우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
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
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
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
는 세액

나. 제2호 나목의 경우 : 공장
이전일 이후 해당 공장에
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공장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
일부 10년 이내에 끝나
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
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6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

나. 가목에 따른 과세연도의 다음 3년(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광역시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

전하는 경우(다만,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나. 제63조제1항제2호 나목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다만, 다목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

초: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신 설>

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감면대상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

다. 제63조제1항제2호 다목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본사 이전일 이후 본사이전법인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본사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전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7년 이

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제55조에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當期純利益)을 말한다]에 「법인세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과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접대비(해당 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의 손금불산입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손금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100분의 9 [해당금액이 20억원(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로서 합병에 따라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조합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에 대하여는 40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

업무추진비

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 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1. ~ 8. (생략)

② 제1항 각 호의 법인(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법인은 제외한다)에는 제5조의2, 제6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10조, 제10조의2,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 제13조, 제14조,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8조, 제28조의3,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4까지, 제30조의2, 제30조의4,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32조제4항, 제33조, 제63조, 제63조의2, 제63조의3,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99조의9, 제102조, 제104조의14 및 제104조의15를 적용하지 아

1. ~ 8. (현행과 같음)

② -----29조의4까지, 제29조의8제3항 및 제4항-----

니한다.

③ 삭 제

④ ~ ⑤ (생 략)

⑥ 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의 기부금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계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의 수익사업(이 항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과 해당 사업 시설에서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만 해당한다)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 6. (생 략)

7. 다음 각 목의 국제행사 조직위원회

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

④ ~ ⑤ (현행과 같음)

⑥ -----

----- 업무추진비-----

-----.

제74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

----- 2025년 12월 31일 -----

-----.

1. ~ 6. (현행과 같음)

7.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

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에 따라 설립된 조직위원회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효율적인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나.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이하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비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조직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이하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라 한다)

라. 삭제

마.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이하 “포물러원국제자동차경주대회조직위원회”라 한다)

바. 삭제

8.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해당 과세연도의 고유목적사업이나 「법인세법」 제2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8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한 법인

9.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8. -----

9. (현행과 같음)

<삭제>

해당하는 법인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29조를 적용하는 경우 그 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3.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

③ 「국가재정법」 별표 2에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해당 기금에서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양도함에 따라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9조제1

<삭제>

③·④ (생략)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2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

③·④ (현행과 같음)

제85조의6(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2025년 12월 31일-----

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③ ~ ⑧ (생략)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거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5조의8(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① -----

하는 중소기업이 동일한 산업단지 내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 1. 2. (생략)
2. 3. (생략)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생략)

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240만원을 납입한도로 하며, 제4항제1호에 따른 소득공제 적용 과세기간

-- 2025년 12월 31일 -----

- 1. 2. (현행과 같음)
2. 3. (현행과 같음)

제87조(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2025년 12월 31일 -----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합계액에 대해서는 500만원까지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납입금액은 모든 금융회사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600만원을 한도로 한다.

1. 가입 당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고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③ -----

1. -----

자집합투자기구의 증권, 장기 주택마련저축,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공모부동산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비과세종합저축, 출자금, 세금우대종합저축, 조합등예탁금, 제형저축, 고위험고수익 투자신탁,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해외주식투자전용집합투자증권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장병내일준비적금,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및 청년희망적금

2. ~ 4. (생략)

② ~ ⑥ (생략)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농민·어민 및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희망적금 및 개인투자용 국채

2.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9조의3(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 ①

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의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2024년 1월 1일 이후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며,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생략)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비

----- 2025년 12월 31일-----

-----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② 2027년 1월 1일 -----

제91조의18(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

과세 한도금액은 가입일 또는 연장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00만원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8백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다. (생략)

2. (생략)

③ ~ ⑫ (생략)

-----.

1. -----

가. -----

-----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나. -----

-----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으로서 제1호에 따른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거주자가 제2호에 따른 저축(이하 이 조에서 “청년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이라 한다)에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계약기간 동안 각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것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만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중

제91조의20(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① -----

-----.

1. -----

가. -----

----- 한정하고,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

정하는 기간 동안 보유하는 경우 1명당 총 매입금액이 2억원 이하인 개인투자용 국채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1. 1명당 1개만 가입할 수 있는 계좌일 것

2. 개인투자용 국채의 매입에만 사용되는 계좌일 것

②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금액의 계산방법, 전용계좌의 운용·관리방법 및 그 밖에 개인투자용 국채 과세특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를 포함한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0[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②·③ (생략)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대통령령으

12

15

②·③ (현행과 같음)

제96조(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① -----

로 정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1. 2. (생략)

② ~ ⑤ (생략)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7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

----- 2025년

12월 31일 -----

1. 2.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2023년 12

월 31일까지 -----

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④ (생략)

제97조의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

②~④ (생략)

제97조의3(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같은 조 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을 양도

2.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모 든 사업을 폐업한 이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사업을 개시하여 제3항에 따른 신청일(이하 이 조에 서 “신청일”이라 한다) 현 재 1개월 이상 사업을 계 속하고 있을 것

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4 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취업하여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할 것

3. ~ 6.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체납액 징수특 레를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20 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징수곤란 체납액을 관 할하는 세무서장에게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납액

2. 2022년 12월 31일 -----

가. ----- 2025 년 12월 31일-----

나. ----- 2025 년 12월 31일-----

3.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 2026년 12월 3 1일-----

징수특례를 신청(분납기간은 5 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하 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⑥ 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 은 제4항에 따라 체납액 징수특 레를 적용하기로 결정한 후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일(이하 이 조에서 “기준일”이라 한다) 당시 해당 거주자로부터 체납액 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제5 항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체 납액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 징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⑦ ~ ⑩ (생 략)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 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1. ~ 3. (현행과 같음)

4.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 2월 31일까지 모든 사업을 폐 업한 경우: 2022년 7월 25일

⑦ ~ ⑩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3(근로장려금의 신청자 격) ① -----

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삭제
2. (생략)
3. 삭제
4.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의 합계액(이하 제10절의4에서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라 한다)이 2억원 미만일 것

- ② (생략)
- ③ 거주자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직계존속의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다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일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

2. (현행과 같음)
4. -----

----- 2억 4천만원 -----

- ② (현행과 같음)
- ③ -----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 -----

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다.

- ④ 삭제
 - ⑤ ~ ⑦ (생략)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단독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50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50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50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50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60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60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6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60

3.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

- ⑤ ~ ⑦ (현행과 같음)
- 제100조의5(근로장려금의 산정)
- ① -----

-----.
1.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4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400분의 165
나	4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165만원
다	900만원 이상 2천200만원 미만	165만원 - (총급여액 등 - 900만원) × 1천300분의 165

2.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7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700분의 285
나	700만원 이상 1천400만원 미만	285만원
다	1천400만원 이상 3천200만원 미만	285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400만원) × 1천800분의 285

3. -----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0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0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0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00

②·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근로장려금으로 한다.

⑤ (생략)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목별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가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나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다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1억 7천만원

⑤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 자격) ① -----

1. 2. (생략)
3. 삭제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일 것
② (생략)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자녀장려금은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홑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20]

2. 맞벌이 가구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20]

② (생략)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

1. 2. (현행과 같음)
4. ----- 2억 4천만원 -----
② (현행과 같음)
제100조의29(자녀장려금의 산정)

① -----

1.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1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1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 1천900분의 30]

2. -----

목별	총급여액 등	자녀장려금
가	2천5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나	2천500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8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 1천500분의 30]

② (현행과 같음)

제104조의30(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 기업에 대한 세

<신 설>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다만, 내국법인이 이월된 사업연도의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배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이월된 초과배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액보다 먼저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이월된 초과배당액은 먼저 발생한 초과배당액부터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

----- 2025년 12월 31일-----

한다.

- 1. ~ 6. (생략)
② (생략)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2호, 제3호,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하고, 제8호의3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 1. ~ 13. (생략)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9호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만 적용하

-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

----- 제9호의3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

----- 201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 1. ~ 13. (현행과 같음)
②-----

----- 2025년 12월 31일-----

하 이 조에서 “특별적용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2022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용역(이하 이 조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환급대상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② ~ ⑤ (생략)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부터 재활용폐자원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중고자동차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다음 각 호의 값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2025년 12월 31일-----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

----- 2025년 12월 31일-----

1. 2. (생략)
②·③ (생략)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생략)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④·⑤ (생략)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⑦·⑧ (생략)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석유류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2호의 석유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것만

1.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9조(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2024년 12월 31일-----

④·⑤ (현행과 같음)

⑥ -----
2024년 12월 31일-----

⑦·⑧ (현행과 같음)

⑨ -----
2024년 12월 31일-----

제111조(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면제) ① -----

----- 2025년 12월 31일-----

개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2. (생략)

② (생략)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cc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 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제5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은 해당 연료에 부과된 개별소비세 중 제3항에 따른 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

1. 해당 경형자동차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소유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

-----.

1.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2(경형자동차 등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로서 배기량, 최대적재량, 크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이하 이 조에서 “경형자동차 등”이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

<삭제>

동차 각각의 합계가 1대인 경우

2.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0호의2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혜대상자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가 아닌 경우

② 삭제

③ ~ ⑫ (생략)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된 자(이하 “내항 화물운송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사업용으로 운항하는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국해운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운조합(이하 “한국해운조합”이라 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유(이하 이 조에서 “경유”라 한다)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을 리터당 56원 감면한다.

<삭제>

③ ~ ⑫ (현행과 같음)

제111조의5(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 ① -----

----- 2025년 12월 31일 -----

(이하 이 항에서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 (생략)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미술관사용분”이라 한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

(이하 이 항에서 “도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

가. (현행과 같음)

나. -----
----- 미술관
또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 “박물관·미술관·영화상영관사용분”-----

----- 박물관·미술관·영

부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대중교통이용분 및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화상영관사용분-----

-----.

4. -----

----- 도서등사용분-----

----- 30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 도서등사용분 -----

----- 15 -----

6. -----
-- <단서 삭제>

가. (현행과 같음)

나. -----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00분의 15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직불카드등사용분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 × 100분의 40

2)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 도서등 -----
사용분 -----

다. -----

1) -----

----- 도서등사용분 -----

도서등사용분 -----

2) -----

25조제4항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접대비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별 한도는 「법인세법」 제25조제4항제2호의 표 및 「소득세법」 제35조제3항제2호의 표에도 불구하고 다음 표에 규정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⑤ (생략)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5호의 해저조광권을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해저조광권자"라 한다)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② 해저조광권자의 대리인 또는 도급업자가 해저광물의 탐사 및 채취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그 해저조광권자의 명의로 수입하는 기계·장비 및 자재에 대한 관

업무추진비

⑤ (현행과 같음)

제140조(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① ----- 2025년 12월 31일-----

② ----- 2025년 12월 31일-----

세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조, 제25조의6,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30조의2부터 제30조의4까지, 제96조의3, 제99조의12, 제104조의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중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29조의7, 제29조의8-----

② (생략)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3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배당소득 또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제14조, 제16조의4제2항·제3항·제7항, 제16조의5, 제2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3항, 제27조, 제38조제1항·제2항, 제38조의2(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0조제3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46조제1항·제3항, 제46조의2, 제46조의3제1항, 제46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2항·제3항, 제46조의8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2항·제3항, 제87조의7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3항·제5항·제6항,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9조, 제91조의14, 제91조의17, 제100조의21, 제104조의4, 제121조의28제3항(금융투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금융투자소득 등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2025년 1월 1일

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21조의30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제3항 및 제146조의2제1항(금융투자소득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주주 등이 2023년 1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제38조제2항, 제46조의7제2항, 제46조의8제3항 또는 제121조의30제3항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38조제1항, 제46조의7제1항, 제46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30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46조제1항·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고 2023년 1월 1

② ----- 2025년 1월 1일 -----
----- 2025년 1월 1일 -----

1일 -----

③ ----- 2025년 1월 1일 -----

----- 2025년 1월 1일 -----

<p>일 이후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이연받은 것으로 보아 제46조제1항·제3항, 제46조의2 및 제4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p>	<p>1일----- ----- ----- ----- ----- -----.</p>
--	---

< 의안 소관 부서명 >

<p>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p>	
<p>연 락 처</p>	<p>(044) 215 - 4131</p>